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고시 알림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을 붙임과 같이 '23.12.27.자 일부개정 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유관 기관·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 고시에 대한 세부내용 및 고시전문은 식약처 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1.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일부개정 고시(제2023-93호, 2023.12.27.) 1부.
 2.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 전문 1부.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신자 본부(56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43개 전부서), 6개 지방청장(54개 전부서), 8개 산하기관,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한의약정책과장, 한의약산업과장), 시도보건환경연구원, 한약제품질검사기관장, 관련 단체 협회장

주무관 이승민 연구관 김지연 한약정책과장 전결 2023. 12. 27. 고후연

협조자

시행 한약정책과-6751 (2023. 12. 2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355 팩스번호 043-719-3350 / ysm223@korea.kr / 대국민 공개

힘내라 대한민국!